

통영 죽림 디엘본 S136 기관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05.(금) 예정)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하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당사와 시공사 및 관련업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및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05.(금) 예정)**에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 * 공급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2개동 총 136세대
[특별공급 41세대(일반[기관추천] 8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01	84.3720A	84A	84.3720	28.6330	113.0050	160.9080	33.0897	41	4
02	84.2800B	84B	84.2800	28.4180	112.6980	160.5480	32.9877	22	2
03	83.8920C	84C	83.8920	28.2970	112.1890	159.8200	32.8390	22	2

▲ 배정세대

* 기관추천 특별 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10% 이내)

구 분	84A	84B	84C	합 계
국가유공자	1(0)	1	1	3(0)
장애인	2(1)	1	1	4(1)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1(0)	-	-	1(0)
중소기업근로자	-	-	-	-
	4(1)	2(0)	2(0)	8(1)

- 상기 세대수는 현재 분양 인허가 진행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예비추천자)를 선정하며, 당 사업지는 40%를 적용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시 청약주택형을 필히 선택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제외)

- ① 청약예금: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청약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통영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당 사업지는 전 평형대가 상기 85㎡이하로 구성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3항 별표2(청약예치 기준금액)에 따라 상기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 1호, 제 55조 제 1호, 제 2호,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03.05.(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개관	2021.03.05.(예정)		당 사 견본주택;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32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1.03.15.(예정) 08시~17시30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방문청약	2021.03.15.(예정) 10시~14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1.03.23.(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1.04.05.~04.07.(예정)		당 사 견본주택;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1-32

- 상기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미 신청시에는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 기관이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에는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과 계약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 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

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